

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 오지환 의원 발의 )

의안 번호	47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03.13.

발 의 자 : 오지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지훈·박미정·오세철·  
강여정·김성주 의원  
(총5명)

## 1. 제안이유

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식관리 지원 체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해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·영양관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및 목적 수정 (안 제1조)

나. '취약계층'의 정의 신설 및 사업 대상 범위 확대 (안 제2조)

다. 설치 및 운영, 사무의 위탁 상위법령 근거 추가 (안 제4조,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[붙임]

- 「식품위생법」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예산편성 불필요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라. 입법예고 : 조례안 예고 예정

##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어린이”를 “어린이와 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2. “취약계층”이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사회복지시설급식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

따른 노인·장애인 등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위생관리”를 “위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순회방문지도”를 “순회 방문지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정보제공”을 “정보 제공”으로 한다.

-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생관리”를 “위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제16조”를 “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6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 중 “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”을 “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”로 한다.  
제8조 본문 중 “경비 산정 반영”을 “예산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취약계층” 이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사회복지시설급식</p>

2. “급식소”란 어린이에게 단  
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  
시 서초구 소재 시설을 말한  
다.

3. · 4. (생략)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  
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  
장”이라 한다)은 급식소에 대  
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통  
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 
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책  
무를 진다.

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 
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  
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에 따  
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  
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 
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해야  
한다.

② 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

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 
따른 노인·장애인 등을 말한  
다.

3. -----  
어린이와 취약계층----

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 
같음)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 
-----  
----- 위생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 
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  
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 
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  
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 
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·  
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(이  
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및  
운영하여야 한다.

② -----

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급식소 순회방문지도,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3.·4. (생략)
5. 우수 농·축·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
- 6.·7. (생략)

제5조(지원 대상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.

1. (생략)
2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로서 운영자가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신청을 한 급식소

<신설>

제7조(사무의 위탁)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순회 방문지도 -----  
-----
- 3.·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 
----- 정보 제공
- 6.·7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원 대상) -----  
----- 위생 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6조-----

3.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

제7조(사무의 위탁) -----  
----- 「어

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센터의 운영평가 등)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---.

제8조(센터의 운영평가 등) -----  
-----  
----- 예산 -----  
-----  
-. -----  
-----  
-----.

# 관 계 법 령

## □ 식품위생법

**제2조 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1. (생략)

12. “집단급식소”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기숙사

나.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

다. 병원

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

마. 산업체

바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

사. 그 밖의 후생기관 등

**제89조(식품진흥기금)**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영업자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)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
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(소비자단체의 교육·홍보 지원을 포함한다)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·활동 지원
  3. 식품위생과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관리(이하 “영양관리”라 한다)에 관한 조사·연구 사업
  4. ~ 4의2. (생략)
  5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
  6.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
  7. ~ 7의2. (생략)
 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, 영양관리,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
- ④ 기금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하되,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.
2. (생략)
3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.
4. ~ 6. (생략)

**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

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통합 운영·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
2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·개발
3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5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6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

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**제12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)** 법 제21조제1항제 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”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.

- 1.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시설
- 2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

**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**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 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 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

**제15조(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)**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”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(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)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
3.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

**제16조(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)**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,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·보관해야 한다.
-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
## □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취약계층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·장애인 등을 말한다.
- 2. “사회복지급식소”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. 다만,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.

**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

터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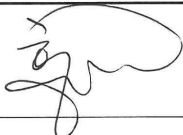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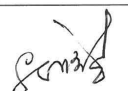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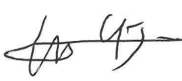
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 □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2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  2.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 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 
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 (오지환 의원 발의)서명부

발 의 자		찬 성 자	
의 원 명	서명·날인	의 원 명	서명·날인
오 지 환		김지은	
		김미영	
		윤정	
		강여정	
		김성주	